

의안번호	제 297호
의결년월일	1995. 7. 31. (제 35회)

의
결
사
항

의
결
사
항
가결



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발의자	박태공의원 외 3인
발의년월일	1995. 7. 21

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9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5. 7. 21

발의자 : 박태공의원 의 3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('95. 7. 1 대통령령 제14703호)으로 고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불합리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10조 조명중 "일비"를 "수당"으로 하고,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"일비"를 각각 "수당"으로 한다.(안 제10조 조명, 제10조제1항, 제2항)
- 나. 제11조 조명중 "일비"를 "수당"으로 하고, 동조제1항의 "일비"를 각각 "수당"으로 한다.(안 제11조 조명, 제11조제1항)
- 다. 제13조중일비의 지급기준을 "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"로 변경 (안 제13조)

3. 본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조명중 "일비"를 "수당"으로 하고,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"일비"를 각각 "수당"으로 한다.

제11조 조명중 "일비"를 "수당"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"일비"를 각각 "수당"으로 한다

제13조중 "일비"를 "수당"으로 하고, "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"를 "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

신·구 조문대비 표